

군산시 공고 제2011-1906호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적용범위 (안 제3조)
- 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안 제6조)
- 다.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안 제7조)
- 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8~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 450-6513, FAX : 450-4598, 이메일 :

lerele1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공무원노조계(전화 450-6513)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군산시 본청·보좌기관·직속기관·사업소·하부 행정기관 및 군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2년이상 파견중인 공무원
 4. 시장이 군산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 ③ 시장은 군산시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편의 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퇴직 공무원에 대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2.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결혼·생일·자녀 입학·명절(설·추석) 선물 제공
4. 공무수행 중 사망·상해 공무원에 대한 장의·보상 사업
5.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7.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후생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
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군산시청매점운영규정」은 폐지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1-1907호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1. 제정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 (안 제2조)
-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 (안 제3조)
- 다.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안 제4조)
- 라. 맞춤형복지 예산현황 공개(안 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 450-6513, FAX : 450-4598, 이메일 :

lerele1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공무원노조계(전화 450-6513)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점수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배정된 점수.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 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은 30%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기관 홈페이지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1-2032호

공 고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I 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의안의 시행에 드는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조달 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의안의 비용 효과성 분석 및 합리적인 의안 심사 등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II 주요 제정 내용

○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안 제3조)

- 군산시장의 비용 수반하는 의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첨부
 - * 예외 :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3억원미만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등
- 비용추계서 생략시 미 첨부시 사유서 제출

○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안 제4조)

-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포함
- 세입 및 세출 작성 방법등
-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 시행일부터 5년, 필요시 단축, 연장가능

○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안 제5조)

- 재원조달방안 구체적으로 명시

○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6조)

- 작성부서 : 의안의 소관부서, 필요시 전문기관 도움
- 사전협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 제출시기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및 의회제출시 첨부

Ⅲ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
-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063-450-6103, FAX:063-452-8157)
-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 자세한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법무계(063-450-61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군산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나. 비용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시 ○○○국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00) 000 -00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시 ○○○국 ○○○○과장 ○○○ <예시 2>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락처	(000) 000 -0000

군산시 공고 제2011-2043호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 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수와 지급액(제3조 2항)

- 1) 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 1회 1,000,000원을 지급한다.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화063-450-6232 팩스063-450-639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취업노사담당 (전화 063-450-6232, 담당자:이영수, E-mail:leecy319@korea.kr)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일부분의 “500,000원”를 “1,0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① (생략) 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 1회 5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와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② <u>1,000,000원</u> 을 ③ (현행과 같음)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1-78호

임피면, 대야면 오산1지구경지정리(6점), 회현면 대정2지구경지정리(10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따른 지적도근점(16점)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BESSEL		GRS 80					토지소재	설치 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평면직각 중환선수치				표고 (m)	위도	경도			
명칭	번호	원점명	X(m)	Y(m)	X(m)	Y(m)						
지적 도근점	51781	중부	273103.40	189608.33	373410.217	189680.836	4.80	35°57'29.4"	126°53'08.2"	임피면 월하리 933	11.7.13	토지정보과
“	51782	“	272208.58	189446.29	372515.404	189518.802	5.15	35°57'00.4"	126°53'01.7"	대야면 접산리 1363	“	“
“	51783	“	272254.23	189303.09	372561.048	189375.607	4.95	35°57'01.8"	126°52'56.0"	대야면 접산리 1363	“	“
“	51794	“	273202.48	189793.05	373509.298	189865.556	4.72	35°57'32.6"	126°53'15.5"	임피면 월하리 929	“	“
“	51795	“	272563.02	189816.05	372869.839	189888.558	5.34	35°57'11.9"	126°53'16.5"	대야면 접산리 1354	“	“
“	51796	“	272381.89	189648.94	372688.713	189721.457	5.36	35°57'06.0"	126°53'09.8"	대야면 접산리 1358	“	“
“	51784	“	266816.21	171650.31	367122.585	171722.759	4.19	35°54'04.1"	126°41'12.3"	옥구읍 오편리 703	11.7.19	“
“	51785	“	267384.92	171850.73	367691.302	171923.168	5.44	35°54'22.6"	126°41'20.2"	옥구읍 오편리 537	“	“
“	51786	“	267223.73	171857.56	367530.106	171929.996	4.22	35°54'17.4"	126°41'20.5"	옥구읍 오편리 708	“	“
“	51787	“	267022.06	171859.35	367328.443	171931.795	4.68	35°54'10.8"	126°41'20.6"	옥구읍 오편리 704	“	“
“	51788	“	266820.35	171861.39	367126.732	171933.840	3.95	35°54'04.3"	126°41'20.7"	옥구읍 오편리 710	“	“
“	51789	“	267413.87	172064.47	367720.255	172136.904	4.91	35°54'23.6"	126°41'28.8"	옥구읍 오편리 437	“	“
“	51790	“	267186.30	172068.92	367492.685	172141.362	4.13	35°54'16.2"	126°41'29.0"	옥구읍 오편리 714	“	“

[illegible]

군산시 고시 제2011-79호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북동 더샵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군산시 산북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에 대하여 전북도 토지주택과 - 22229(2011.11.15)호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되었기에, 승인 당시 「주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련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11월 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4	산북동 더샵아파트	군산시 산북동 산45-1번지 일원	60,581	감)60,581	-	

나.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폐지	14	군산시 산북동 산45-1번지 일원	60,581 → 0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라 종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 - (환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358	8~14	국지 도로	400 (216)	산북동 산35-7 소로1-413	산북동 산32-2 소로2-360	일반 도로	제4토지	전북고45 (‘83.3.10)	
변경	소로	2	358	8	국지 도로	400 (216)	산북동 산35-7 소로1-413	산북동 산32-2 소로2-360	일반 도로	제4토지	-	환원
기정	소로	2	360	8~10	국지 도로	1,097 (215)	산북동 250 중로2-58	소룡동 1420-1 소로2-355	일반 도로	제4토지	전북고45 (‘83.3.10)	
변경	소로	2	360	8	국지 도로	1,097 (215)	산북동 250 중로2-58	소룡동 1420-1 소로2-355	일반 도로	제4토지	-	환원

※ ()는 변경부분 연장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358	소로2-358	• 당초 확폭구간(L=261m) 폭원축소(B=감3~6m)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중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환원)
소로2-360	소로2-360	• 당초 확폭구간(L=215m) 폭원축소(B=감2m)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중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환원)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획지에 관한 계획 : 폐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4	1	60,581	1-1	산북동 1-5번지 일원	59,281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2	산북동 1-29번지 일원	871	도로(소로2-358 인도)
			1-3	산북동 1-28번지 일원	429	도로(소로2-360 인도)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폐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4	1-1	용 도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권장용도 : 해당사항 없음
		건폐율	· 16% 이하
		용적률	· 190%이하
		높 이	· 15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1-80호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1년 11월 일

1.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47	8	국지 도로	178	수송동 11-3 대로 2-5	수송동 63-129 소로2-739	일반 도로	-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2	147	8	국지 도로	178	수송동 11-3 대로 2-5	수송동 63-129 소로2-739	일반 도로	-	-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1-81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 변경 ·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1. ~ 21.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군산시 개정면 회미로 895-17외 10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군산시 개정면 남발산길 5-3외 114건

종전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군산시 개사길 168외 205건

종전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1-82호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재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범위를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군 산 시 장

1. 재지정(변경) 목적

-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여 군산시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역사적·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함

2. 재지정 내용

- 전통시장 7개소(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명산시장, 문화시장, 주공시장, 대야시장) 주변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현행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 재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제한 하고자 그 내용을 알림.

3.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4. 보존구역 범위

구 분	전통시장 명	위 치	비고
계	7 개소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공설시장	군산시 신영동 18-1외	
	신영시장	군산시 신영동 19-5외	
	역전시장	군산시 대명동 138-133외	
	명산시장	군산시 명산동 19-10외	
	문화시장	군산시 문화동 917-1외	
	나운시장	군산시 나운동 836-1외	
	대야시장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89-11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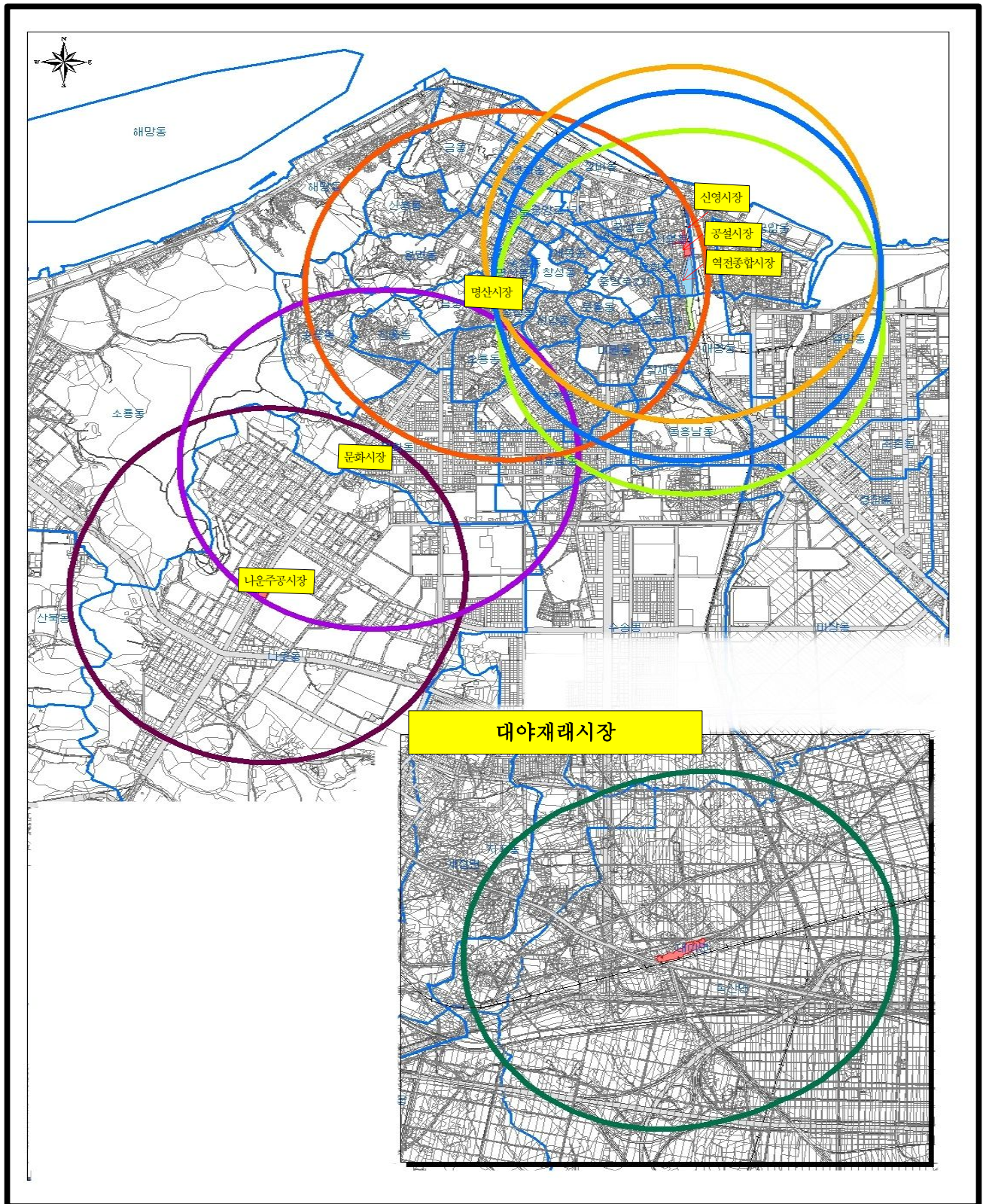
5.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도서 열람

- 방문열람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상정계(☎ 063-450-4352, Fax : 063-450-6391)
- 인터넷 열람
 -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

6.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 행 일 : 이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총괄도



군산시 고시 제2011-85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1.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받기반 조성 (밭작물 재배)
2. 사업 위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간 120외 2필지
3. 지목 및 지적 : 임야 7,923㎡
4. 사업시행면적 : 6,039㎡
5. 사업비소요액 : 자부담 8,000천원
6. 사업예정기간 : 인가증발부일로부터 2개월
7. 공고기간 : 2011년 12월 1일 ~ 2012년 1월 1일
8. 사업효과 : 농지확대 및 농업소득
9. 사업시행자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73번지 박 종 울

※ 기타 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군산시 건설과 농촌개발계 (☎450-4371)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1-1967호

군산시 금고지정 결과 공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군 산 시 장

1. 약정기간 : 2012. 1. 1 ~ 2013. 12. 31 (2년)

2.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 일반회계
- 전북은행 :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신한은행 : 기금
- 국민은행 군산지점 : 주택사업특별회계